

# 한농연중앙연합회 월례 세미나 보고서

## 2011-01 2011/03/28

### 신경분리 농협법 통과와 향후 과제

#### 목 차

- I. 주제발표문  
(한국협동조합연구소 김기태 소장)
  - 1. 농협법 주요 개정 사항
  - 2. 개정 농협법의 평가
  - 3. 향후 과제
- II. 토론회 발언 내용 녹취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부설 농업정책연구소)

※ 본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보도하시기를 원하시거나 그 밖의 문의를 원하실 경우에는, 한농연농업정책연구소 한민수 연구팀장(070-7165-0017, [kwak121@chol.com](mailto:kwak121@chol.com))에게 반드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I. 주제발표문

### 1. 농협법 주요 개정 사항

#### (1) 사업구조개편

- 1중앙회-2지주회사 체제로 전환(2012.3.2 시행)
  - 중앙회가 지주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출자자로서 지배구조 확보
-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장기적으로 농협경제사업 추진
  - 법 시행후 3년 이내에 판매,유통 관련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로 이관, 법 시행후 5년 이내에 여타 경제사업(자재, 정책사업 등)을 경제지주로 이관(부칙 6)
  - 경제사업 자본금을 우선 배분토록 규정(국회통과시 경제자본금은 30% 수준으로 합의됨)
- 금융지주회사의 설립과 농협금융기관 특수은행으로서 농협은행을 자회사로 분리
  - 일반 은행업무 외 농업금융 업무 수행
  - 농업인 관련 자금을 우선 지원하거나 우대조치할 수 있도록 함
- 지주회사의 명칭사용료 제도 도입
  - 농협은행 등 농협 명칭을 사용하는 영리법인에 대해 영업수익(금융관련 법인) 혹은 매출액의 2.5% 이내에서 명칭사용료 부과(159의2조)
  - 명칭사용료의 요율은 중앙회 총회에서 결정

#### (2) 사업구조개편에 대한 정부지원

- 부족자본금의 지원
  -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국회 상임위 보고 및 심의절차 명시(부칙 3조1항)
  - 실사하여 자본금 확정 및 지원방식에 대해 예산안 국회 제출 전에 심의받아야 함.

- 정부지원방식(중앙회 혹은 금융지주)과 규모는 추후 산정. 원칙적으로 지원 후에도 중앙회 자율성은 침해하지 않는다는 조항(부칙 3조2항) 삽입

○ 과세 특례

- 법인 등록세, 취득등록세 등 법인 분리시 일시 발생하는 세금은(8천억 추산)은 감면
- 사업 수행시 매년 사업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현재 농협중앙회가 부담하는 세 수준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함.
- 법조문에 명시되지는 않음.

(3) 경제사업활성화 관련

○ 판매사업 관련 조항의 강화, 신설

- 판매,가공,유통사업을 농협의 우선적인 사업목표로 규정(6조)
- 농축산물수급조절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135의2조)

○ 경제사업활성화 계획 수립 및 추진의 의무 부과(부칙5조)

- 중앙회에서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의 운영
- 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 평가하고 매년 추진상황을 농식품부에 보고

○ 농산물판매활성화사업평가협의회를 설치 평가(135의3조)

- 경제대표 성과 평가시 판매활성화 사업평가를 반영, 인사에 영향

(4) 공제사업의 보험으로 전환

○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의 2개 보험회사를 설립

- 현재 공제상품에 상응하는 보험종목은 이미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부칙15조)자동차보험은 별도 허가 필요
- 조합과 농협은행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취급되며, 조합의 농협보험 취급은 방카슈랑스 규정 적용을 5년 유예(부칙15조), 농협은행 지점은 즉시 방카슈랑스 규정 적용

(5) 조합 선거제도 개선

- 일선 농축협 조합장 전국 동시 선거 실시(부칙 11조)
  - 2015년 3월 두번째 수요일(11일), 동시선거
  - 2009년 3월 22일부터 임기가 개시된 조합장의 임기는 2015.3.20까지 임기 연장
- 공정선거 풍토 정착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
  - 조합장의 축부의금 제공 제한(조합 명의 및 조합경비 명기)
  - 선거운동방법 개선(소형인쇄물 배부 삭제, 공개적 지지 호소 허용)
  -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정관이 아니라 농식품부에서 정하도록 함.
  - 불법 선거 관련 자수자의 경우 형 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함.

2. 개정 농협법의 평가

(1) 농민단체합의안 등과의 비교

- 농민단체 합의안의 체계도와 개정된 농협법 사업구조 개편은 다음의 두 그림으로 비교할 수 있음.

그림 1. 농민단체 합의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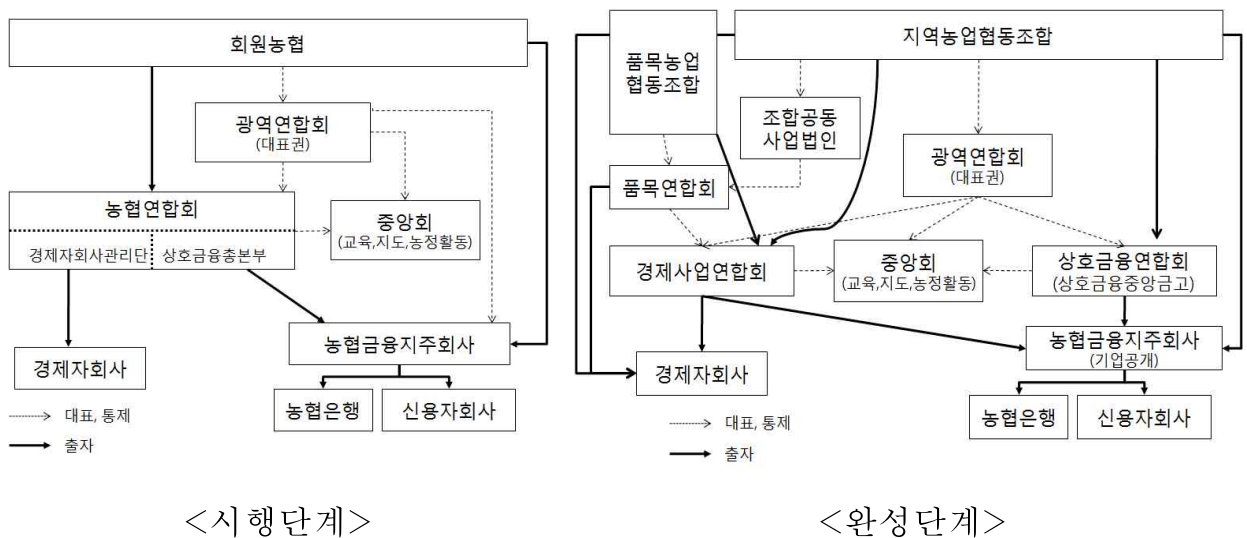


그림 2. 개정 농협법 사업분리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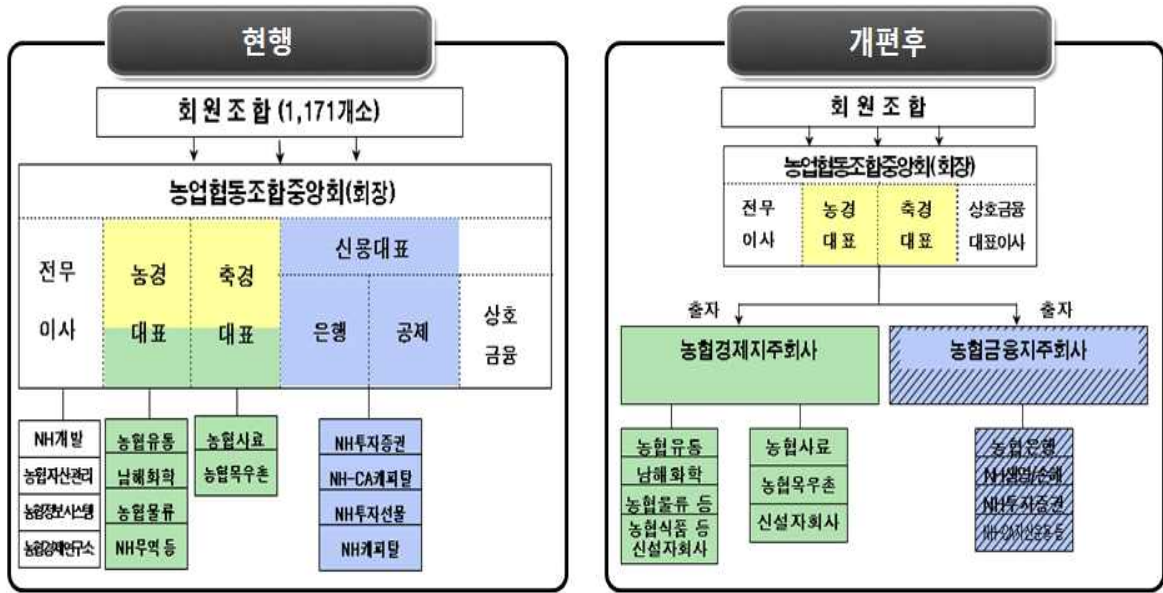


표 1. 개정법과 농민단체 합의안 주요 내용 비교

	개정내용	농민단체 합의안	비고
법인분리	1중앙회-2지주(경제, 금융)	2연합회(연합회, 중앙회)-1지주	-
법인성격	중앙회 : 현행 자본금 승계 경제지주 : 시행 자회사 관리	중앙회 : 비자본조직, 교육정책활동 전담 농협연합회 : 현행 중앙회 자본금 승계(상호금융총본부, 자회사관리단 운영)	-
장기개편	경제지주의 5년내 경제사업 완전 이관 / 연구결과에 따라 상호금융연합회 분리 검토	경제연합회-중앙회-상호금융연합회 분리	일부 반영
경제사업 활성화	관련 조항 강화	신경분리의 목표로서 제시	반영
금융지주 상장	상장 없음	3년내 상장 준비	-
광역연합회	조항 없음	비사업 금융지주 지배구조 강화 차원의 광역연합회 설립	-
자본금배분의 법적 근거	경제사업자본금 우선 배정을 농협법에 포함 경제자본금은 30% 수준	별도의 자본금 배분 법률 제정을 1년 이내 실시 6조원 정도의 자본금 예상	일부 반영
과세특례	분리시 8천억 경감 운영시 과세수준 현행 유지	분리시 감면, 조세특례	반영
부족자본금	실사 후 국회 심의하여 예산으로 지원	금융지주 출자는 반대	일부 반영

- 개정된 농협법과 농민단체 합의안을 비교하면 구조적 측면의 반영은 미흡하지만, 운영상의 과제는 일부 반영되었음.
- 현재 농협법의 조문상 모호한 점들(예를 들어 경제 정책사업까지 모두 경제지주로 이관하는 지 여부 등)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획되고 실행되는가에 따라 구조적 차이점의 격차가 달라질 수 있음.

## (2) 역사적 의의

- 현재의 법개정이 협동조합적 정체성을 강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평가를 차치하고 17년 동안 진행된 중앙회 신경분리 논의의 첫 매듭을 지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지님
- 농협 신경분리 논의는 농협이 진정한 농민조합원의 조직으로 거듭나는 데 가장 중요한 쟁점이기는 하지만 너무 오래 끌면서 과잉쟁점화된 경향이 있음.
- 이번 법 개정은 신경분리 논의에 일단락을 지으며, 다양한 농협의 발전과 관련된 쟁점을 다룰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음.

## (3) 개정법의 개선 내용

- 중앙회가 일선조합과 농민조합원의 경제사업과 권익을 대변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선언하고 독려하는 조항을 삽입하여 기존의 농협법 개정이 주로 운영민주화에 편중된 것에서 진일보하였음.
-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육성, 경제지주회사간의 협력 등 조합과 중앙회 경제사업의 연계를 강화시키는 조항들도 삽입되어 판매농협의 성격을 더 많이 띠도록 법률 개정 된 것도 개선됨.
- 경제사업 자본금이 현행 2,700억원에서 자산재평가 반영 후 5조원 정도로 추산되도록 대폭 상향조정되어 중앙회의 유통인프라 참여가 가능할 것임.(여유자금 8천억, 부채비율 50% 감안할 때 3조원 정도의 투자 여력 확보)
- 법인의 분리를 통해 중앙회 직원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경제사업 인건비 경감 요인 발생 등으로 경제사업 및 금융사업의 경쟁력 강화가 예상됨.

#### (4) 문제점 및 보완 필요 사항

- 금융지주의 지배구조 및 사업 확장의 제한
  - 개정 농협법에서는 금융지주의 주주로 농협중앙회만 출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비상장을 전제로 하고 있음.
  - 금융지주회사를 만드는 제일 목적은 일반적으로 자본금 확충인데 반해 상장되지 않을 경우 중소 금융기관의 M&A 등 사업확장에 어려움이 있을 것임.
  - 동시에 금융지주회사법에 대주주의 의결권을 9%로 제한하는데 이 경우 정부 자본금 지원이 금융지주로 확정된다면 의결권의 상당한 제한이 있을 것임.
- 공제사업의 보험사업으로 전환에 따른 조합의 민간보험 판매 가능성
  - 개정 농협법에 따르면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정의 유보기간이 5년에 불과, 5년 후면 민간보험회사의 상품을 농협에서 판매해야 함.
  - 새로운 법개정 활동으로 공제사업을 다시 되살리는 방법을 강구해야 함.
- 상호금융연합회 설립이 모호하게 처리
  - 개정 농협법에서는 부칙25조에 시행후 1년 이내 연구의뢰하여 상호금융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으로만 명시되어 있음.
  - 금융지주의 비상장과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기존의 경험상 이런 조문으로는 상호금융연합회 설립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금융지주 운영 과정을 검토하면서 상호금융연합회 논의가 재개되어야 함.
- 일선조합-중앙회-지주회사 지배구조 재구성은 미흡
  - 개정 농협법은 양 지주회사를 중앙회가 100% 소유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음. 동시에 광역연합회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일선조합의 중앙회에 대한 상향식 통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앙회가 지주회사를 100% 소유하면 '대리인 문제'가 더 심각해 질 수 있음.
  - 비상장 상태 금융지주에도 기관투자자의 출자가 형식적으로 열려 있

는 상황에서(법적으로 중앙회 외의 주주를 둘 수 없다고 명시되지 않았음), 지배구조의 안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함.

### 3. 향후 과제

- 사업구조 개편 관련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 개정 농협법에 따라 중앙회가 운영하는 “사업구조개편준비위원회”,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가 가동되어야 하며,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농산물판매활성화사업평가협의회”도 운영되어야 함.
  - 운영 당국은 법 취지에 맞는 인사를 공정하게 선정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농업인단체에서도 역량 있는 인사를 추천하여 실질적으로 운영을 독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
- 시행령-시행규칙-정관례의 구체화에 대한 적극적 참여
  - 선거운동 방법의 개선, 농업은행 농업 관련 자금 지원의 우대조치, 농업은행의 감독 등 시행령에서 정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서도 법 취지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한 의견수렴이 위의 위원회 등을 통해 이뤄져야 함.
  - 세부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정관례에 대한 농업인단체와 학계의 사전 연구와 선제적인 의견 제시가 필요할 것임.
- 경제사업 활성화 구체계획의 수립 참여
  - 경제사업 활성화 구체 계획은 경제사업 투자 방향에 따른 자본금 산정과 지주회사-중앙회-일선조합-조합원의 사업 관계 및 협력 관계 등 향후 농협 경제사업의 방향을 정할 중요한 과제임.
  - 농협과 농식품부는 물론 농업인단체도 구체계획 수립에 최선의 관심을 기울여 합의된 경제사업 구체계획이 도출되고,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대중적인 개정농협법 내용 홍보 및 의견수렴 활동 전개 필요
  - 개정 농협법의 의의와 평가 및 향후 전개 예상에 대한 대중적 홍보 및 의견 수렴이 이뤄져야 함.
  - 2009년 2월 농협법 개정 도별 순회 토론회 및 국회 토론회는 당시



어려운 여건에서 지배구조 농협법 개정의 동력을 만들고 순조로운 합의와 통과를 가능하게 하였음.

- 따라서 개정 농협법이 정해진 상황에서 농식품부-농업인단체-학계-농협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농협법 설명 및 향후 구체화에 따른 의견 수렴의 도별 순회토론회를 준비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갈등을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

○ 차기 법개정 논의

- 공제사업, 광역연합회 등 필수적인 법개정은 차기 법개정 논의로 연결되어야 함.
- 다만 사업구조개편에 대한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법 시행 추이를 보면서 판단할 지, 지금부터 방향을 잡고 진행해야 할 지는 현재 판단하기 어려움.
-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함.

## II. 토론회 발언 내용 녹취록

- 일시 : 2011년 3월 23일(수) 15:00~17:00
- 장소 : 한농연회관 5층 강당
- 주최 :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 주관 : (주)한국농어민신문
  
- 좌장 : 윤주이 (주)한국농어민신문 전무이사
- 주제발표자 : 김기태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 지정토론자
  - 손재범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 최양부 농협제자리찾기운동본부 대표
  - 김완배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 김창수 농협중앙회 경제구조개편본부 부장
  - 황의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이양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

### 1. 주제발표문에 대한 코멘트

#### 윤주이 전무이사(한국농어민신문)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 오늘 주제발표문에 대한 코멘트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손재범 사무총장(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저희가 볼 때는 김기태 소장님 발제처럼 구조적인 문제, 어떻게 조직을 구성하고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한농연도 농협개혁위원회에 안을 냈지만 입법과정에서 많은 변형이 있었습니다.

다만, 신경분리가 50년 농협중앙회 체제를 바꾸는 것이어서 향후 과제가 많고, 앞으로 운영차원에서 어떻게 만들지 1년 동안 그 이후라도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농업인들과 합의를 이끌어낼 것인가, 거버넌스를

만들 것인지가 현 상황에서 중요합니다.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최양부 대표(농협제자리찾기국민운동본부)

우선 발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것은, 김기태 소장께서 정부안과 농민단체 합의안을 대조하셨는데, 농민단체 합의안의 실체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단일안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존재했는지, 어느 단체가 합의해서 만든 안인지요? 불분명한 안을 가지고 정부안과 대비해서 반영됐다 안됐다 하는 것은 이상합니다. 이번 정부안은 한농연은 지지 성명을 내서 통과를 촉구했지만, 전농은 반대 성명을 하고 투쟁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각 법률안을 비교한 내용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습니다. 그간 정부안이 계속 수정되었고, 정부안도 당초 2009년 10월 28일 나왔던 안과, 3월 3일 수정안과는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농민단체안도 농협개혁위원회안이 제출된 상황에서, 법 개정 직전에 제시된 안들을 봐야 합니다. 저희 농협제자리찾기운동본부가 제시한 안도 계속 변했기 때문에, 사실 관계에 의거해서 정확히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초 정부안, 이번 법안소위를 거치면서 정부가 내놓은 1차·2차 수정안, 최종적으로 3월 3일 수정된 안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미 농식품위 법안소위의 속기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를 유심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3월 3일과 4일의 속기록을 제가 읽어봤는데, 정부와 농협, 국회의원들이 경제사업 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집요하게 논쟁을 벌이는 대목이 생생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속기록은 향후 자본금 실사 작업이라든지 경제 및 금융지주의 설립 과정, 자본금 배정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라 봅니다. 언론 또한 정부안을 소개할 때 정부안이라고 단순히 소개한다면 잘못된 여론을 이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초 정부안, 정부가 이끌고 가려 했던 안, 최인기 위원장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제시한 안, 국회에서 통과된 최종안을 비교해야만 농협법 개정안의 실체가 나오고 올바른 평가도 가능할 것입니다. 김기태 소장의 발제문과 같이 단순하게 쓴다면 이번 농협법 개정안이 호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협제자리찾기운동본부의 안 또한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객관적으로 비교해 봐야 할 것입니다.

## 황의식 연구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저는 이번 농협법 개정에 있어 법조문에 나타나지 않은 내용까지도 향후 우리에게 남아 있는 과제가 아닌가 합니다. 왜냐하면 종합농협 체제로 이뤄지면서 신용사업 중심으로 사고했던 틀과 운영 원칙이 전반적으로 다 바뀔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 농협이 지녀왔던 비협동조합적이며 모순된 요소들을 이제 새로 잡아 나가야 합니다.

저는 경제사업과 관련하여 협동조합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해야 할지, 과거와 다른 패러다임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이, 농협 임직원은 물론 조합장님도 분명히 알아야만 신경분리의 올바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농협법이 개정된 현 시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중간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상호금융연합회 설립 문제는 완결되지 못했으며, 경제사업과 교육지원사업의 분리 또한 그렇습니다. 그간 농협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정치적 의사결정 구조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해서 한계점은 분명하지만, 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혹시나 이러한 한계점들 때문에 이번 농협법 개정의 취지가 흐려져서 잘못됐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자의 입장이고, 단계적으로 완결 구조를 갖춰 나가는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김기태 소장이 말씀하셨듯이 공제사업을 되살리는 것을 법 조문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또한 농업공제 부문과 일반공제를 분리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예외조항을 넣으면 많은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과제들은 충분히 중간 단계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중간 단계에서 오류다 잘못이다 지적하는 것은 지양했으면 합니다.

## 김창수 부장(농협중앙회 경제구조개편본부)

저는 이번 농협법 개정을 통해 지역농협과 농협중앙회가 판매중심 농협으로 이행하는 부분은 물론, 경제지주에 중앙회의 경제사업을 5년 후 완전 이관하도록 돼 있는데 그 사이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경제사업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봅니다. 향후 농협중앙회는 경제정책사업까지 경제지주에 이관할 것입니다.

다만, 3년간의 성과를 평가한 뒤에 나머지를 이관한다는 것 중에 문제제기가 된 것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무이자자금과 지도사업비를 통한 조합지원자금인데, 경제지주로 가면 회사가 달라지기 때문에 관련 세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경제지주가 못 갖고 갑니다. 둘째, 경제지주회사가 처음에는 관리형 순수지주회사로 출발하는데, 자재사업이나 산지유통 등 조합과 연관된 사업을 짧은 기간 내에 자회사화 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제사업이 경제지주로 완전 이관되면 사업지주회사가 되는데, 이것은 회장 밑에서 부서 단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입니다. 다만, 어떤 방식의 경제지주회사 인지는 개정된 농협법에 명시돼 있지는 않고 3년 동안 추진하면서 검토해야 할 과제거든요. 추후 평가를 해서 경제사업을 완전히 이관한다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5년 내 경제사업을 어떻게 자립시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 1년 동안 어떻게 준비하느냐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제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최양부 대표

국회 속기록을 보면 이 부분을 논의하는 과정이, 농협중앙회가 2020년까지 경제사업을 옮기겠다고 주장했고, 국회의원들은 5년 내에 옮기도록 주장해서 5년 내에 옮기도록 됐습니다. 그러면 5년간 기다렸다가 할 것이냐는 얘기가 나왔고,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해서 최초 경제지주회사가 출범할 때 무엇이 들어갈 것인지, 2014년까지 3년 동안 유통관련 분사를 경제지주로 옮기는 내용 등이 김효석 의원의 지적으로 인해서 들어갔고, 궁극적으로는 정책사업도 옮기도록 했거든요. 예를 들어 배추 수급사업은 중앙회가 하지만 나중에는 옮긴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논쟁점이므로, 속기록을 참조하면서 제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농협중앙회 경제사업을 2016년까지 경제지주회사에 옮기는데, 농협이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 의 평가를 통해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뉘앙스의 차이가 있지만 애매하게 마지막 부분이 돼 있습니다. 2016년까지 모든 경제사업을 넘기느냐, 평가 결과 옮기기 어렵다고 해서 못 넘기느냐 하는 것들이 향후 논쟁거리가 되겠다고 생각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정부 당국도 확실히 해야 하며, 농협중앙회에만 맡길 일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진지한 토의와 확실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완배 교수(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제가 농협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가 중간에 해산됐습니다만, 2008년 1차 법 개정시 반영된 부분이 있고, 이번 법 개정은 주로 신경분리 문제에 대한 것이었는데, 신경분리가 농협 개혁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법 개정의 성과를 평가할 때는 농협 개혁의 전반을 논의하여 평가해야 하는데, 이번에 개정된 것만 가지고 평가하니까 협소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농협개혁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 중 법 개정시 반영된 것 중,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농협중앙회 지배구조라든지 농협중앙회 및 지역조합의 임원 선출 방식, 조합원의 조합 선택권 확대, 조합의 광역 확대, 품목조합 활성화, 신경분리 문제 등이 있지요. 앞에서 일부 사항만 반영되고, 신경분리로 오면서 시간이 지연되니까, 농협 개혁이 마치 신경분리만으로 완결된다고 오관하는 사람들까지 생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농협 개혁의 전체를 평가해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 최양부 대표의 말씀처럼 저 또한 농민단체 합의안의 실체를 알 수 없습니다. 그간 여러 가지 안이 나왔고 농협개혁위원회 안도 여러 번 바뀌었는데, 농민단체 합의안이라는 게 언제 나왔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법 개정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신경분리와 관련한 여러 이슈가 있었는데, 첫째는 구조적으로 연합회로 할 것이냐, 중앙회 체제로 할 것이냐, 지주회사를 몇 개로 만들지의 문제가 있었고, 둘째는 자본금을 경제와 신용에 어떻게 배분하고 부족 자본금을 어떻게 조달할지의 문제였고, 셋째는 농협중앙회 신용사업이 금융지주회사로 분리되면 지역조합의 상호금융이 타격을 입을텐데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2009년 10월 28일 제출된 농식품부의 농협법 개정안에 자본금 문제와 상호금융 문제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서 저를 포함한 농협개혁위원회 민간 위원들이 반발하면서 위원회를 해산했는데, 경제사업 부문에 자본금을 30%를 배정한다지만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상호금융의 분리 문제, 부족 자본금 문제 같은 건 어찌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발표문의 평가 내용에는 안 나오는데, 부족 자본금에 대한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족 자본금을 정부가 지원해 달라, 그것을 금융지주회사에 배정할지의 여부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무조건 부족 자본금을 정부 돈으로 채우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협 스스로

의 자구 노력, 예를 들어 지역조합 상호금융에서 조달하는 것도 제시됐는데, 그건 다 잊혀지고 현재의 관점에서만 평가하니까 평가의 관점이 좁아진 것 같습니다.

### 이양호 국장(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어려운 가운데도 농협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신 한농연, 최양부 대표님, 학계, 농협, 한국협동조합연구소 등에 감사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된 것은 아니고, 정부안에다가 의원님들이 내신 6개 법률안이 병합 심리된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농식품위 대안 법률로, 각 법률안의 일부를 추려서 반영하였고 심의 과정에서 없던 내용도 반영된 것입니다. 이번 법 개정안이 모든 주체를 만족시킬 수 없지만 국회가 모든 주체와 타협을 해야 하는 곳이므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농협법 개정안이 여러 번 수정되면서 3월 3일 또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농협보험 문제, 연합회냐 지주회사냐,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각자의 입장에서는 다 반영된 것도 아니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의견들을 1년 이상 논의해서 최대공약수를 뽑은 게 의의가 아닌가 합니다. 농협 개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2009년에 1차로 바뀌었고 2년 만에 바뀐 것입니다. 앞으로도 문제점이 생기면 수시로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보기에, 틀은 갖추어졌는데 틀 속에 어떻게 채우고 운영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여 반영하겠습니다.

김기태 소장님의 평가에 대해서는 표로 단편적이랄까, 이것을 너무 간추리시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향후 과제를 보시면 “대주주 의결권” 같은 것은 저희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금융지주법이나 은행법의 대부분을 배제하여서 문제가 적을 것으로 봅니다. 조합은 방카슈랑스를 5년 유예인데, 방카슈랑스률은 25%입니다. 특정 회사 상품을 25% 이상 팔아서 안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자산 규모가 2조원 이상인 조합에만 적용됩니다. 그런데 1,180여개 조합 중에 자산 규모가 2조원 이상인 곳은 2개 밖에 안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5년 내에 이 조항을 적용받을 조합은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금융지주 상장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상장 여부에 대해서는 단체마다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농연은 3년 이후 상장해야 한다고 하고, 전농 등은 외국자본에 팔아먹는 게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법 개정안에는 상장 관련 조항이 없고, 상장 여부는 주주가 결정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참고로 지난 3월 농협중앙회가 국회 업무보고를 할 때 의원님들이 상장 여부를 물었는데, 농협중앙회장은 현재로서는 상장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농산물판매활성화평가위원회는 “농협경제사업평가협의회”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경제사업 이관과 관련하여 최 대표님 말씀도 있었지만, 이는 3월 3일의 핵심 논점 중 하나였습니다. 중앙회의 경제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주제였는데, 일부 의원님들은 3년 내에 넘겨야 한다고 해서 2015년을 주장하셨고, 농협중앙회는 2020년을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중간인 2017년을 제시했고, 결과적으로 3+2년 방식으로 해서 판매유통사업은 3년 이내에 넘기고, 나머지 경제사업은 평가해서 이후 2년 내에 다 넘겨서 최종적으로 5년 내에 다 넘기는 것으로 했고 농협도 동의했습니다.

#### 김기태 소장(한국협동조합연구소)

농민단체 단일안은, 2010년 1월부터 시작해서 전농, 한농연 중심으로 모여서 농민단체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상황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 9월에 논의가 시작됐는데, 전농은 농민연합, 한농연은 ‘농협 개혁을 위한 범국민연대’를 통해 합의 초안을 논의하고, 양 조직이 11월초에 합의한 것으로 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최근 전농이 농협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은 농민단체 단일안에 대한 해석의 차이 같습니다. 전농은 농민단체 합의안을 법 개정사항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한농연은 주어진 조건을 감안할 때 찬성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완배 교수님과 최양부 대표님의 말씀처럼, 농협법 개정과 관련된 모든 논의들을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비교해 주면 상당히 좋았겠지만, 그럴만한 시간이 없었고 정리 과정에서도 다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좀 더 보완하겠습니다. 농협개혁위원회안, 농민단체 합의안, 정부안,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된 확정안을 비교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완배 교수님 지적처럼 보완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속기록과 최종 법 개정안을 가지고 보완하겠습니다.

황의식 박사님 말씀처럼 신경분리가 되면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그것을 정확히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계속 고민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관점을 말씀드리자면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의 역사적 의의가 있고 경제사업의 틀을 개선해 낸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평가도 중요하지만 이미 주어진 법 개정 사항에서 구체적으로 최선을 다해 정리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2. 단기적 과제에 대한 입장

### 윤주이 전무이사

단기적으로 볼 때, 농협중앙회 자본금의 실사 평가가 중요하고,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 뿐만 아니라 조합장 동시 선거 관련 사항, 시행령·시행규칙·정관례 등이 제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13년 차기 정부 국회 출범 후 상호금융연합회 문제라든지, 금융지주회사의 기업공개 과제 같은 것들은 장기적 과제라 생각합니다.

다만 간담회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오늘은 단기적 과제에 집중하고, 올 하반기 때 장기 과제를 점검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올바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단기적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 김창수 부장

우선 중요한 일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농협법에는 각 지주회사의 분리 시기를 2012년 3월 2일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부족 자본금의 정부 지원 문제이므로 내년도 예산안 반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는 늦어도 올 상반기 중에는 내부 자본금 충당계획을 확정하고, 부족 자본금을 계산해서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략 4월부터 6월초까지는 자체 자산 실사를 끝내야 하고,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도 마무리해야 합니다.

또한 개정 농협법에는 사업구조개편준비위원회와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를

발족시켜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위원회를 4월초에는 발족시켜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자본금 실사를 위한 내부 합의를 위한 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농업인단체라든가 학계, 다양한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정부와 협의해서 모시려고 계획중입니다.

## 손재범 사무총장

농민단체 입장에서는 경제사업 자본금 배분 규모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30%+ 알파라 했는데, 실사 과정에서 보유 자본금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금액 규모가 달라지므로, 농협중앙회는 더 받고 싶을 것이고 정부는 덜 주고 싶을 겁니다.

핵심은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을 어떻게 내느냐, 정부가 이를 인정할 것이냐, 부족 자본금을 한 번에 받을 것이냐, 단계적으로 받을 것이냐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을 정확한 금액이 얼마나 할 수는 없겠지만, 사업구조개편위원회와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에 참여하여 이번 신경분리의 취지인 판매농협으로의 전환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농협이 제시한 계획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검증을 통해, 경제사업 부문의 자본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 황의식 연구위원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 과거 경험으로부터 반성해야 할 점이 있다고 봅니다. 2007년 개정된 농협법에 의거하여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를 농협중앙회 내에 두고 매년 평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가 적합한 전문가로 구성돼서 제대로 활동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회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농협 경제사업을 꾸준히 연구하시고 노력하신 분들이 참여하고 이해 당사자들이 적극 참여해야만, 보다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경제사업 활성화의 방향 설정 자문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양호 국장님과 농협중앙회 김창수 부장님께, 위원회 구성을 잘 해서 실질적으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 김창수 부장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는 농협중앙회 내부 조직이 맞습니다. 이번 개정 농협법에 추가로 명시한 부분이, 농협중앙회장은 판매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정부에 제출토록 하여, 농식품부 내 경제사업평가협의회를 만들어서 정부 차원에서 평가토록 한 것입니다. 2중의 검증 절차를 해 났으므로 이전과는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 최양부 대표

자본금 배정에 관련 문제는 3월 3일 농식품위 법안심사소위의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이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문이 많았어요. 그런데 농협중앙회의 답변이 경제사업에 대한 자본금 배정 계획이 전혀 없다, 금융지주에 자본금을 배분하겠다는 식이었거든요. 그러니 국회의원들로부터 농협중앙회가 어떻게 경제사업 활성화를 할 수 있겠느냐는 질타가 있었어요.

2010년 말 기준으로 농협중앙회에 14조 5천억원 수준의 자본금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다 써도 BIS 맞출 수 없다는 게 아니냐는 의원들의 지적이 제기되면서, 자본금 문제가 확실히 쟁점화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은, 경제사업 부문에 자본금을 우선적으로 배정해라, 그 기준을 실사 후에 확정된 자본금으로 해서 30%+ 알파를 배정한다는 내용을 약속받은 것이죠. 농민단체가 얘기했던 우려를 감안해서 농협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확정됐기 때문에, 김완배 교수 말씀처럼 아쉽지만 향후 평가시 5조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자본금 실사 이후 5조원 가량이 경제사업에 배정된다는 것은 확정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농협이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본금 실사 과정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실시될지가 관건인데, 이는 매우 전문적이며 기술적인 사항입니다. 좌우간 객관적으로 평가가 잘 돼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실사 과정과 내용도, 예를 들어 정부가 농협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실사 결과에 따라 정부가 부담해야 할 액수가 결정되고, 이를 농협에 준다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금융지주에 갈 수밖에 없거든요. 실사 결과와 정부 지원금은 연동돼 있습니다. 실사 결과에 따라서 30%는 확보된다, 그 다음에 은행 설립시 부족 자본금 문제니까, 정부가 실사를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됩니다. 그런데 현재 농협이 기투자한 경제사업 투자액이 2조 1천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늘어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더해 실제 추가로 확보되는 것은 2조 7천억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경제사업을 위한 적절한 자본금 확보를 위한 변수는 되겠지만, 이번에 합의된 정신을 확실히 이행한다는 점을 전제한다면, 이번 농협법 개정의 가장 큰 소득은 경제사업이 50년만에 최초로 예측 가능해졌고, 자기 스스로 계획을 독자적으로 세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실질적인 판매농협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역사적 의의를 가진다고 봅니다.

## 김기태 소장

중요한 것은 자산 재평가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있습니다. 2009년 농협법 개정 당시 조합공동사업법인에 30%까지 중앙회가 출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육성하고 일선 조합과 농협중앙회가 공동 출자하는 방식으로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군지부를 존속시킬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중앙회가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2009년 농협법 개정 당시 반영한 항목이 있었거든요. 이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경제사업 자본금을 확정해야 할 것입니다.

금융지주는 30%까지 기채를 기재부가 요구하면 부족 자본금이 줄어드는데, 농업계 입장에서 기채를 허용할 것이냐에 대해 합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 황의식 연구위원

은행에서 CEO가 바뀔 때, 어떤 방식으로 대손상각을 할 것이냐에서 많은 차이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새로 취임하는 CEO는 대손상각을 많이 시켜야만 이후 자신의 경영 성과가 좋아지는 결과를 볼 수 있으니까, 시중 은행들은 이러한 방식을 많이 해 오지 않았나 합니다. 그래서 기준의 일치성 유지 같은 게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나머지 실사 문제는 매우 기술적이므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부실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의 기준은 사람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최양부 대표

농협중앙회 조직이 완전히 개편되는 과정에서 자본을 실사하는 겁니다. 농협중앙회 50년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고, 공간을 다 들춰야 하는 일이지요. 그런데 실사 결과 나타날 농협중앙회 내부 회계로 처리됐던 회수불능 부실 채권 처리 문제 때문에, 농협중앙회의 실제 자본금이 얼마나 될 것인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농협중앙회의 금융손실이 많다고 알려지고 있어서, 건전성 상태에 대한 부분을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산 액수에 따라서 경제사업에 배분돼야 할 30%의 자본금이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본금 실사를 회계법인에서 할텐데, 정부도 실사 과정을 잘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양호 국장님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 이양호 국장

대부분 사람들이 이번 농협법 통과가 끝이라 하는데, 이제부터 또 시작해야 할 시점입니다. 자산 실사는 회계법인에 용역을 의뢰할 것입니다. 당연히 정부가 농협중앙회 함께 하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입니다. 예산 편성 절차와 맞물려 있습니다만, 회계법인에 용역을 주기 위한 공개입찰을 할 것입니다. 일부의 우려처럼 숨겨진 부실이 나오는 게 아니냐 하지만, 그간 농협중앙회가 제1금융권으로서 농식품부와 금융위의 감독을 받아왔으므로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는 철저히 감독할 것이고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재무제표상으로 2010년말 농협중앙회 자본금은 14조 6천억원입니다. 장부상 부동산 평가액이 늘어나고, 재고 등을 실사하고, 대손충당금도 제대로 쌓았는지를 볼 것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의 생각은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쪽입니다. 그래서 경제사업에 배분되는 자본금 30%는 당초 예상보다 큰 금액이 될 것 같은데, 이미 투자된 2조 1천억원 외에 나머지 3조원여를 어떻게 쓰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를 통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겠지만, 앞으로는 농업인의 농산물을 제대로 판매하는 부분에 제대로 써야 할 것입니다. 당초 2009년 농협중앙회가 제시했던 사업 아이템중에는 소매점 건립, 저유소 건립

같은 게 있었지만, 판매사업 활성화에 집중 투자해 나가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 김창수 부장

2010년말 농협중앙회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할 때 실질적으로 경제사업에 배정되는 금액은 약 4조 1천억원입니다. 자산 재평가를 해서 자본금이 늘어난다고 해도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는 한 신규 투자재원으로 쓸 수 없습니다. 경제사업 부문의 경우 2조 1천억원은 이미 투자가 완료된 것이고, 이사회 의결을 받아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7천억원이 있습니다. 나머지 차액이 신규 투자 재원이 될 것입니다.

### 김기태 소장

양재 물류센터는 몇천억원씩 자산 규모가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 쪽에 불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 3. 경제사업 활성화 관련

### 윤주이 전무이사

이제는 경제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논의했으면 합니다.

### 김완배 교수

농협 개혁의 핵심은 경제사업 활성화입니다. 농협이 산지에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소비지에서의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저의 평소 지론입니다. 농협은 산지에서만 역할을 강화하고 대형유통업체가 소비지 유통에서 역할 해 주면 되지 않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유통업체들은 수입 농산물로 아웃소싱을 많이 하고 있어서, 농협이 대형유통업체를 견제하고 국산 농산물의 판로를 확보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산지와 소비지에서의 역할을 농협이 잘 해줘야 합니다.

산지에서 지역조합이 현행 시스템을 가지고 경제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냐에 대해,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저는 산지 조합을 광역 합병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연합마케팅이나 조합공동사업법인 등을 얘기한다면 저는 편법이라 봅니다. 프랑스가 그렇게 가다가 광역 합병으로 갔고, 일본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늦춰서는 안됩니다. 광역화됐을 때, 대농민 서비스 강화는 다른 방식으로 가야 맞습니다.

경제사업을 위해서는 현재의 지역농협은 너무 규모가 작습니다. 작년 배추 파동에서 봤듯이, 산지 조합들이 연합마케팅이나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서 산지에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래서 광역 합병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지난 번 1차 법 개정시 합의됐지만 농식품부가 너무 게을렀어요. 조합경영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빨리 실사를 하여 과감하게 통폐합해야 한다고 주문했지만 전혀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실시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산지유통 시설과 관련하여 농식품부가 상당히 된 게 아니냐 생각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저장 능력이 상당히 노후화되고 낙후됐습니다. 그런 쪽에 투자되어야 하는데, 농협의 힘만으로는 모자랍니다. 정부가 힘을 보태서 빨리 보완되어야 합니다.

소비지에서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내 농산물 주된 판로 역할을 하면서 대형유통업체 견제를 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종합유통센터가 더 많이 늘어나야 합니다. 도매시장으로는 잘 안됩니다. 농협 공판장 체제로는 도저히 해결 안 됩니다. 이것 또한 100% 농협 힘만으로 안 됩니다. 정부가 힘을 실어서 늘려줘야 합니다.

또 하나는 중앙회가 중심이 돼서 공판사업이나 자회사 시스템을 갖고 하는데, 여기에 조합이 여러 가지 형태로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지역조합도 직접 참여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구요.

다음으로, 산지와 조합이 광역화하더라도 여전히 이슈로 남는 게 품목별 조합 육성 문제입니다. 품목별 협의회가 29개가 운영중이지만, 품목별 조합의 역할이 안 되고 정책 건의나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빨리 됐으면 하지만 시간이 걸리므로 몇 개 조합만이라도 육성하는 게 어떻겠느냐 합니다. 한우나 감귤 같은 큰 품목을 가지고 시도하자고 농협개혁위원회에서 제안했는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몇 개 조합이라도 제대로 묶어서 전국 차원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앙회 자회사가 난립돼 있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과감히 통폐합해

야 합니다. 중앙회 부장 상무가 낙하산 타는 형태로 되어서는 안됩니다. 농협유통, 농협유통, 축산유통... 그렇게 난립해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황의식 연구위원

그간 전농이 경제사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주장해 온 것을 보면, 농협중앙회 중심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우려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생각합니다. 한국 농협이 제대로 협동조합적으로 운영돼 왔다면 농협중앙회 경제사업 활성화와 조합 및 조합원의 이익에 대한 논란이 이렇게까지 심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농협중앙회 자회사가 주식회사로서의 단기 영업수익 극대화에만 매달린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경제지주도 사업분리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다보니까 지주회사로 분리되는 것이지, 연합회적 기능을 할 수 있는 틀로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관이 라든지 운영 원칙에 있어서 경제지주 부분을 좀더 잘 만들었으면 합니다. 명칭의 경우도 법상과는 다르게 좋은 명칭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췄으면 합니다.

둘째는 도 단위 경제사업 조직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입니다. 법상에는 없지만 판매·유통·가공 부문은 규모화도 중요하며 그 고유의 역할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은 지역의 차별화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논쟁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작목별로 통합해야 할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부분은 지역별로 완결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도 단위 경제사업 조직을 만드는 것은 김창수 부장님께서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

김완배 교수님도 지적하셨지만, 소매사업이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식품 가공사업 등에 대해서도 농협이 직접 수행해야 할지에 관련하여 갈등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한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 손재범 사무총장

이제 판매농협으로 이행하겠다고 선언했는데, 경제사업의 자본금이 마련되면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우리 농업이 잘 안되는 부분에 투자해야 할텐데, 보는 이마다 시각은 다르겠지만, 한국 농업의 상황에서 소비



지 시장에서 농협이 열세인데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는 관점에서 농협이 소비자 시장에서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경제사업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조합원의 이질성, 조합에 대한 기대 등을 감안서 자본금을 어떻게 쓸지 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경로는 여러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전국 단위, 도 단위, 시군 단위, 잘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합원이 조합에 기대는 부분이 상당히 이질적이지 않은가 합니다. 원로조합원들이야 행정기관 복지기관 정도로 바라보기 때문에 조합도 딜레마가 많을 것입니다. 어떤 조합들은 경제사업을 시군 단위로 올리자 해서 공동사업법인을 만들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합니다.

다만 농협중앙회가 왜 이런 사업을 해야 하느냐 보다는, 농협중앙회와 조합간의 협력을 통해서 한국 농산물 시장에서 얼마나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느냐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하겠지만, 농협중앙회와 조합이 공동 책임과 협력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게 농협중앙회 자금이 투자되어야 하고, 규모가 커지고 성과가 나타나면 광역 단위, 전국 단위로도 발전되지 않을까 합니다.

## 최양부 대표

이번 농협법은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체를 경제지주로 설정하여 경제사업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 속기록을 보면 시작부터 경제지주를 의원들이 엄격히 받아들이고 있지 못합니다. 논의 과정에서 김효석 의원이 경제연합회 법안을 제안했습니다만, 지배적인 결론은 2010년 4월 농식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미 경제지주로 하자 했으니 되돌리지 말자고 해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의결 결과에 대해서 의원들이 다들 마음이 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지주가 자본주의 논리만 관철하는 게 아니라, 회원조합을 위해서 일하는 회사로 성격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 해서 다짐하고 조건을 붙이는 단서 조항이 추가된 것입니다. 법 조문에 따라서는 경제지주는 단순한 회사가 아니라 중앙회로 간주한다고까지 선언을 하는 조항이 나옵니다. 경제지주에 대한 연합회적 경제지주의 정체성을 갖추도록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앞으로 일관되게 관철되어야 하는데, 경제지주 이사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달려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의 대부분은 겸직을 하는 형식을 통해서 농민적 지배 원칙과 협동조합적 원칙이 관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제지주에 독자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만드나 마나한 결과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배는 제대로 해서 농민조합원 입장에서 제대로 따지되, CEO가 경영권 및 인사권 등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경제사업은 어떻게 이관시키느냐가 중요한데, 정확하게 경제지주는 판매농협의 정신을 구현하는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하고, 자본금 배정을 경제사업에 배분한다고 해서 30%+알파라 한 것이지, 중앙회에는 얼마를 놔두고 경제지주에는 얼마를 넘길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이 부분이 자칫하면 농협이 당초 생각했던대로 중앙회로 해서 경제지주에다가 4조 몇천억원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앙회가 자본금을 쥐고 앉아 있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요. 농협중앙회가 계획을 수립하겠지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예민한 문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합니다. 경제지주가 처음 출범하는 2012년까지의 1단계, 판매유통사업의 이관이 완료되는 2014년까지의 2단계, 전체 경제사업의 이관이 완료되는 2016년까지의 3단계를 염두에 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경제지주가 경제사업을 이관받으면 앞으로 시군지부와 시도지역본부가 무슨 일을 하느냐의 문제가 생깁니다. 은행은 금융지주로 다 떨어져 나가는데, 그렇게 되면 시군지부는 할 일이 없어요. 또한 시도지역본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는 경제사업과 자동적으로 연동해서 개편해야 합니다. 시군지부에서 금융 창구를 빼면, 나머지 부분은 경제사업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될 것이고, 시도지역본부는 판매본부로 한다고 했는데, 이는 경제지주와 어떻게 연결시키느냐가 연관되는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된 구조조정을 김완배 교수가 걱정하시는데 농협중앙회가 결심을 해야 합니다.

회원 농협과 연대해서 경제사업 활성화를 하기 위한 형식의 조직과, 회원 농협이 커버할 수 없는 고유의 회사가 만들어져서 농협 전체를 상대하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수출 등을 할 수 있는 조직체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회원과 관련된 사업을 도 단위로 유통조직화해서 경제지주가 출자하고, 도 단위에 있는 회원조합이 공동 출자해서 유통회사를 설립하고, 이들 회사가 독자적으로 도 단위에서 국내 시장을 상대로 경쟁하도록 하되, 경제지주는

유통회사에 대해 지원을 하고 이 회사들이 과잉경쟁을 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 다음으로 시군지부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시군 단위가 공백이 생기게 되니까, 읍면 조합들을 결국 시군 단위로 광역화하는 회원 조합 통폐합 작업이 제기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군 조합이 광역화를 하되, 그 이상을 뛰어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겨날 겁니다.

회원 조합들의 미래상은, 결국 경제사업과 상호금융을 주축으로 한 회원 조합의 사업 활동을 분리해서, 경제사업은 자유롭게 현물 등을 출자해서 전문적인 중간 단계 광역조직으로 넘기고, 회원 조합들이 스스로 경제사업을 하라고 해도 되지 않을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원 조합은 상호금융으로 돈을 벌고, 경제사업은 유통회사에 투자토록 해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과감한 발상이 필요할 것입니다. 회원 조합은 상호금융 및 교육지원 및 지역사회 안정화 기능으로 가도록 해서, 결국 경제사업 활성화이지만 경제지주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큰 지각변동을 가져오는 첫 단추가 되지 않겠느냐 합니다.

다만 경제지주가 그림이 완성되는 형태는 2016년까지 3단계로 진행되도록 되는데, 2012년 발족할 때 13개 관리지주회사로 일단 출범시키고 보자는 중앙회 간부들의 생각대로 돼서는 첫 단추부터 꼬이는 것입니다. 판매농협으로 농협을 전환하기 위한 신호탄으로써, 판매농협의 역할과 기능을 하겠다는 정신을 가진 경제지주의 설립이 중요합니다.

## 김기태 소장

이미 대형유통업체들은 저장·산지계약까지 수직계열화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러한 부가가치 증대가 모든 사업 조직이 가진 고민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협이 이런 일은 하고 저런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지역농협 컨설팅을 해 왔는데, 판매 활성화를 제대로 하려면 첫째 농가조직화부터 해야 하고 둘째는 농자제도 통일시켜야 합니다. 표준화되고 좋은 자재가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산지와 소비지 얘기만 하다가 도매시장 얘기가 빠졌는데, 신유통뿐만 아니라 도매시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국 각지의 도매시장에 있는 농협 공판장이 따로 놓고 있어요. 이를 합병하든 시스템화해서, 네덜란드의

그리너리 협동조합과 같은 방식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농협 신경분리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전제는, 농협중앙회가 가로막고 있는 것들만 해결하면 일선 조합은 알아서 잘 할 것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전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일선 조합의 수익 구조는 신용사업 중심이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경제지주가 경제사업에 공동 투자하자고 제안하더라도 일선 조합이 제대로 나설지 의문입니다. 만약 합병을 하게 되더라도 관료화되고 조합원 이질화의 문제도 생기므로, 합병이든 조합공동사업법인이든 여러 방법을 다 해보자는 것입니다. 경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조직을 빨리 제대로 만들고, 유통 자회사 등과 직접 연결시키는 방법을 찾아나가야지, 조합 합병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 최양부 대표

브랜드 통합도 중요합니다. 농협중앙회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만해도 여러가지고, 조합별 지역별 품목별 브랜드가 난립하고 있습니다. 서구 협동조합 처럼 선키스트, 그리너리 같은 하나의 브랜드가 대표하는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 농협에는 ‘하나로’라는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농협=하나로”가 자동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경제지주 브랜드로 통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굳이 농협경제지주회사라고 꼭 딱딱한 이름을 지어야 할까요? 연합회적 성격을 감안해서 다른 이름을 써야 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그러므로 주식회사 선키스트가 있듯이 ‘주식회사 하나로’를 출범시켜서 경제사업을 한다는 것을 온 나라와 전 세계에 알린다면, NH경제지주회사보다는 훨씬 가치 있을 것입니다.

## 김창수 부장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을 최대한 담도록 하고, 사업분리의 중간과정에서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경제지주 문제인데, 이의 성격을 분명히 했거든요. 조합원의 구·판매 등 조합원의 이익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해야 한다, 농협중앙회가 설정하는 의제와 같이 가야 한다, 이사회 구성도 조합장 중심으로 되는 부분 등이라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지금 있는 13개 자회사만 묶어서 만든다면 굳이 농협중앙회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습

니다. 3년 내 판매사업 이관, 5년 내 전체 사업 이관이라 규정돼 있으므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내에 이러한 계획들을 담아내야 합니다. 이들 사항이 법적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해야 하고, 상반기에는 기본 계획을 완성하고 하반기에는 세부 계획을 만들어서 향후 5년간의 추진 계획을 만들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엮이는 게 있는데, 김완배 교수님이 지역조합의 참여가 필요하다, 황의식 박사님도 도 단위의 경제사업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손재범 총장님 등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 농협법에 상당한 의미가 포함돼 있습니다.

농협법 6조를 보면 조합과 중앙회간 경합 문제가 제기되는데, 조합과 중앙회가 공동출자 형태로 하면 경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돼 있고, 농산물 판매 활성화에 있어서 다른 조합 및 중앙회와의 공동 사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조합과 중앙회가 공동사업을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 봤어요. 공동 투자하게 될 경우 반드시 회사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지역단위부터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농협중앙회와 지역간 다양한 사업이 될 것이고, 사업이 배가될 것입니다. 지역 단위의 공동 투자는 지역 조직의 결성을 촉진할 것이고 광역 주체를 육성하도록 할 것입니다.

끝으로, 경제사업 활성화가 중앙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조합, 조합원에 다 연관됩니다. 같이 책임과 의무의 주체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정부가 필연적으로 도와줘야 하므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짜나가겠습니다.

## 이양호 국장

정부와 농협은 몇 달에 걸쳐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위원회도 농민단체, 정부, 농협이 구성토록 나와 있고, 이 위원회를 운영할 때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산지는 출발점이므로 매우 중요하고, 소비지도 중요합니다. 저희가 볼 때는 더 중요한 게 농협이 거대 도매상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로클럽을 더 많이 하더라도, 전체 농산물 유통의 관점에서 보면 큰 비중을 차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대형유통업체 견제의 역할은 하겠지만, 배추와 같은 경우 대형유통업체나 대량소비처에 공급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법 개정 과정에서 연합회나 지주회사냐의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안은 없기 때문에 작년 4월 법안심사소위에서 표결까지 갔고, 우여곡절 끝에 이번에도 지주회사 형태로 갔는데, 지주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연합회적 요소를 강화하는 선언적 조항을 법 조항에 넣었습니다. 지금도 농협중앙회 자회사를 보면 대부분 이사들이 조합장님입니다. 결국 의사결정 과정에 조합장이 상당 부분 들어가서 현장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번 개편의 근본 목적이기도 하고, 전문가 분들이 의견을 많이 내 주시면, 활성화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 4. 하위 법령 개정을 포함한 단기적 과제들

##### 윤주이 전무이사

지금부터는 조합장 동시선거 관련 사항은 시행령, 시행규칙, 정관제 문제와, 일선 조합의 중장기 혁신 방안이라든가, 일선 조합 직원의 혼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손재범 총장

조합장 선거가 개별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통합하는 것은 좋은 취지입니다. 다만,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여러 이해 주체의 의견을 모았는지 의문이구요. 어떤 조합은 2년 이상 연장되는데, 조합원의 동의 없이 연장하는 것은 해당 조합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추진 과정과 조합원의 동의 없이 돼 버리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둘째는 일선 조합 개혁 과제가 중요한데, 조합원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현재의 규모 내지는 조합원의 기준을 정리하는 것이 협동조합의 기본 정체성을 찾는 데 출발점이라 생각합니다.

##### 김기태 소장

조합장 동시 선거는 어떻게 보면, 조합장 선거 비리 같은 것 같은 농협의 부정적 이미지 행정적 편의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 생각되지만, 중요한

것은 선거 방식의 변화라 봅니다. 소형 인쇄물이 빠지고 대중이 있는 곳에서 유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세 내용은 시행령에 반영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가 주장한 것은 정책토론회 등 역량 점검 장치를 두자고 제의했지만 법 개정사항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시행령이나 정관을 바꿀 때 더 많은 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 황의식 연구위원

글쎄요. 저는 조합 내 선거 제도를 언제까지 지금의 틀로 그대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조합장 동시 선거까지 실시하면서 지금의 조합 임원 선거 제도를 갖고 가는 것이 정말로 협동조합적인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김완배 교수도 계시지만 농협개혁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이 많이 논의한 것 중 하나가, 협동조합은 대의 체제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직선으로만 끌고 가면 그룹별 대표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선거 제도에 대해서는 별로 달갑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완배 교수

저희도 농협개혁위원회를 통해 이와 관련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한때 모든 선출직을 직선제로 뽑으면 다 좋다고 하는 식의 유행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대학교에서도 직선으로 학장이나 총장을 선출하지 않거든요. 금년 2월부터는 단과대 학장에 대해서도 직선을 안 합니다. 직선제가 갖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기 때문입니다. 조합이 규모화될수록 경영과 관련한 전문성이 더 많이 필요해질텐데, 직선 조합장이 이를 제대로 감당해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저는 직선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데, 이사, 감사, 대의원의 선거 주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매년 선거를 치릅니다. 기왕이면 이런 것도 주기를 맞추는 게 좋겠습니다. 간선으로 가면서 주기를 맞춰 선거를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창수 부장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직선제의 장단점을 따지기 전에 어차피 조합장 선거를 해야 한다면 동시 선거가 낫습니다. 사업 측면에서 볼 때 지역 내에서 시군이든 도 단위가 됐든 조합장님들끼리 모여서 얘기할 때 꼭 선거 시기가 발목을 잡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는 좋아질 것이라 봅니다.

내년 사업구조 개편과 관련하여 할 일이 많은데, 내년에는 조합장 선거가 많지 않아서 좋은 조건입니다. 의견을 공유하고 일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좋은 기회고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 5. 종합 정리 발언

### 윤주이 전무이사

지금까지 단기 과제를 논의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신경분리 이후 중장기 혁신은 향후 과제로 남겨두고, 이 문제는 연말에 따로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종합 정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태 소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조합장 직선제의 문제나 사업 활성화와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이사회에서 호선을 하면 아주 좋을 것입니다. 다만 항상 걸리는 것은, 대의원과 이·감사의 역량 문제, 실제 이 사람들이 조합원 입장을 대변해 주면서 올라와서 임원이 되어 대표권과 경영권이 분리되고, 조합원의 요구를 제대로 대의하면서 경제사업 활성화와 연결시킬 수 있는냐에 대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농협의 문제가 이렇게도 심각한 이유 중 하나는 협동조합 지도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하지 못하는 데 기인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협동조합의 중심은 사람입니다. 협동조합 지도자 육성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만들고, 모든 지역에서 농협은 지도자 육성 교육이 기본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겠나 합니다.



## 손재범 사무총장

예전에 농협 개혁 과제가 구호 중심이고 단편적이었다면, 앞으로는 전문적인 영역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조합원의 대리인 역할을 농협이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는 일은 농민단체는 물론 학계 등도 열심히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일상적으로 분석하고 감시하고 판단하는 체계가 농민단체 입장에서는 향후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합니다.

## 황의식 연구위원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려면 농협 직원들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게 잘 된다면 아마도 일선 조합 또한 상당히 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과거와 같은 방식을 탈피하기 위해, 교육 등을 통해 빨리 이뤄졌으면 합니다.

이번 논의에서 검토되지 않은 것이 상호금융 문제 같습니다. 우려스러운 요소도 가지고 있고, 자금 운용이나 중앙회 기능이 잘 구축된다면 하나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 바라는 것은, 상호금융이 조금이라도 다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면서 필요한 법 제도사항에 대해 충분히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농축협이 예대비율이 40%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회의 자금운용 능력이 떨어지면 조합의 수익 감소로 직결됩니다. 정부가 많은 관심을 쏟아주셨으면 합니다.

## 김완배 교수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농협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봅니다. 신경분리뿐만 아니라 지배구조 개선, 광역조합 통합 등등이 있는데 차질 없이 추진돼서 그동안 조합원들이 가진 불만이 불식되고 진정한 농민 조직으로 재탄생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당사자들이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특히 정부 역할이 중요합니다.

저는 특히 상호금융이 상당히 걱정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상호금융이 전국 조직화돼야 합니다. 상호금융연합회 출범 및 조합 광역화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프랑스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상호금융 부문을 전국 조직화하고 조합간에 연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시군 금고를 조합

상호금융에 맡기도록 한다면, 경제사업 활성화와 조합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금융지주가 전국 은행처럼 되면 지역 조합의 상호금융의 뿌리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걸 빨리 보완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종합농협 체제에서 농협중앙회가 경제지주와 금융지주로 나뉘는데, 이는 각 사업 부문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이 때문에 농협중앙회의 인력 채용 방식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영어 시험 점수만으로 채용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대를 대비하여,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특채하는 등의 대책도 필요합니다.

## 최양부 대표

이번 농협법 개정이 가지는 기본적인 의미는 50년 만에 농협 개혁을 하는 출발점에 섰다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도 막연히 선 게 아니라 2012년까지, 그리고 2014년, 2016년까지 나가야 할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 지점들을 찾아가야 하는데,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게 뭐냐 하면,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협 개혁도 중요하지만 농협중앙회의 협동조합적 정체성 또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농협중앙회가 비사업적 연합체적 기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농민단체들도 이 과제를 마지막까지 강조했으며, 어떤 의미에서 현재 전농이 개정 농협법에 대해 반발하는 가장 큰 명분은 이게 실종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결정의 내용을 자세히 뒤집어보면, 2017년에는 경제사업이 다 떨어져 나가고 신용사업은 금융지주회사로 가서 없는 것이니까, 결국 농협중앙회에는 회원 지원사업과 상호금융만 남습니다. 거기서 상호금융만 떼면 중앙회는 자연스럽게 비사업적 기구로 가는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설정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농민단체가 절망할 필요가 없죠.

상호금융을 분리 독립시켜야 한다는 김완배 교수의 말씀은, 농협중앙회가 고유의 기능을 확립하는 데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길게 잡아서 상호금융도 2016년에 동시에 분리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전체적인 틀을 짜서 다시금 농협법 개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농협중앙회는 전체적인 질서를 잡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둘째, 정부에서 2009년 농협개혁위원회의 작업을 통하여 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조합 선택권 확대 등 새로운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조합 선택권 확대 조항의 시행 시기는 이미 2010년 12월에 시작됐거든요. 이것과 경제사업 부문이 제대로 연관되도록 통합 규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 4년간 농협제자리찾기운동을 해 오면서 이번 농협법 통과 과정에서 느낀 것은, 근래에 보기 어려운 민주 사회에서 협상의 정석 같은 게 아닌가 합니다. 여러 갈등 요소가 있었지만 국회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법은 국회 조정안이지 정부안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6개 농협법안을 절충해서 만든 것입니다. 여야 합의안을 통과시켰다는 것도 드문 일이 아닙니까? 정부, 농협, 농업인단체 모두가 아쉽지만 조금씩 챙길 것은 챙겼다는 것이죠. 그게 협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체들이 이긴 것입니다.

2007년 당시 정부가 신경분리는 2017년에나 하겠다고 했는데, 그 때부터 농업인단체들이 반발했고, 농협법 개정 과정에서 농업계가 갈라섰습니다. 그런 갈등의 세월이 4년 동안 있었는데, 이번 타협안을 통해서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입니다.

이제는 농협의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상호금융이 갈등 요인이 되겠지만, 농협이 고집을 부릴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상호금융연합회를 만들고 농협중앙회를 비사업 연합회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되, 지금 농협이 안고 있는 과제는 농협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어요. 노조 따로 누구 따로 될 수 있고도, 지주회사 출범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범연대 기구를 만들고 서로가 협력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와 같이 농협이 편협한 자세를 가질 게 아니라 대승적인 자세로 인재를 널리 구한다는 자세로 전문가들을 포용해야 할 것입니다.

## 김창수 부장

최양부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경제사업 쪽의 추진 계획이 정확하게 나와야 하기 때문에 올해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라 봅니다. 저는 경제사업 부문의 실무 책임을 맡고 있으므로 여기 계신 전문가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더라도 계속 보완해야 하므로, 올해 준비과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윤주이 전무이사

장시간 토론에 임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를 마칠  
것습니다.